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보세사 개정사항 안내

(초판 1쇄 2025.05.12)

※ 3과목 화물관리 ※

용어 개정	기존표현	개정표현
	적하목록	적재화물목록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13 5. (1)	(1) 다른 보세구역으로의 반출명령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추가로 물품반입이 곤란하거나,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보세화물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 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다른 보세구역으로의 반출명령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른 보 세구역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① <u>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이 초과되어 추가로 물품반입이 곤란한 경우</u> ② <u>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보세화물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③ <u>기타 물품의 종류·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반출이 필요하다 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u>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31 1. (1) ①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 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u>파손되거나 변질되어</u>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교재 페이지	개정사항
P. 29 4. (1) ④ 신설	<u>④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대상으로 고시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u>

교재 페이지	개정사항
P. 43 (5),(6),(7), (8),(9) 신설	<p><u>(5)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u> 중계무역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 동안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된 동일 화주의 중계무역 목적 반입물품의 합계 중량 대비 중계무역으로 수출된 물품의 합계 중량으로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화주가 중량을 대신하여 금액(FOB)을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p> <p><u>(6) 보관인</u> 국고귀속 되기 전까지 국고귀속물품을 보관·관리한 시설의 운영인을 말한다.</p> <p><u>(7) 국고귀속이전 보관료</u> 국고귀속 되기 전까지 해당 물품의 상하차 및 보관·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p> <p><u>(8) 보관료율</u> (7)에서 규정한 보관료의 지급기준을 말한다.</p> <p><u>(9) 매각금액</u> 국고귀속물품이 위탁판매 등의 방법에 따라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말한다.</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44 3. (1)	<p>(1) 상기 2. ①에 해당하는 물품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상기 2. ①에 해당하는 물품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고, <u>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45 (3)	(3) 상기 2. ③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 상기 2. ③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상기 2. ③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 상기 2. ③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46 (4) ① ㉔	㉔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㉔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중계무역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만,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하되, 세관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고 장기간 보관하여도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중계무역 수출 실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48 1. (2) ②	②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설명특허기간 만료시점에 반출통고하여야 한다.	②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 만료시점에 반출통고하여야 한다.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P. 52 2. (1)</p>	<p>(1) 긴급공매 대상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으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p> <p>①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p> <p>② 참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③ 기간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p> <p>④ 지정장치장·보세창고·보세구역 외장치장에 반입되어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되지 못한 물품으로서 화주의 요청이 있는 물품</p>	<p>(1) 긴급공매 대상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으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p> <p>① <u>살아 있는 동식물</u></p> <p>② <u>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u></p> <p>③ <u>참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u></p> <p>④ <u>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u></p> <p>⑤ <u>지정장치장·보세창고·보세구역 외장치장에 반입되어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되지 못한 물품으로서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물품</u></p> <p>⑥ <u>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법 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u></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P. 59 (3) ②</p>	<p>② 보세구역운영인은 공매물품의 반출 신고를 전자신고 등으로 전송하고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매반출승인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을 낙찰자에게 인도한다.</p>	<p>② <u>운영인등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매반출승인을 확인한 후 공매 물품의 반출신고를 하고</u> 해당 물품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P. 59 10. (1) ⑤, ⑥, ⑦</p>	<p>⑤ 검사.검역기관에서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 물품으로 판명된 경우</p> <p>⑥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u>⑤ 검사·검역기관의 검사·검역 결과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u></p> <p><u>⑥ 체납자가 압류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총당금으로 납부한 경우</u></p> <p><u>⑦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P. 63 4. (1)</p>	<p>(1) 국고귀속 대상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또는 관세법 제210조제4항에 따른 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을 관세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귀속 처리할 수 있다.</p>	<p>(1) 국고귀속 대상 세관장은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법 제2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p> <p><u>① 제35조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u></p> <p><u>②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압류물품 국고귀속 예정통지서를 받은 체납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관세·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총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u></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63 4. (2)	<p>(2) 화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에 대한 국고귀속</p> <p>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화주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8조부터 제212조제1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법 제212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동·식물검역대상이나 식품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국고귀속 심사하기 전에 세관에서는 직접 동·식물검역 또는 식품검사를 검역·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합격된 물품은 국고귀속을 하지 아니한다.</p>	<p>(2) 화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에 대한 국고귀속</p> <p>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화주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8조부터 제212조제1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법 제212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 처리할 수 있다. 다만, <u>세관장이 식품검사대상물품이나 동·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매각 전 식품검사 또는 동·식물검역을 검사·검역기관에 의뢰하여 검사·검역기관으로부터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귀속을 하지 아니한다.</u></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137 (4) ③, ④	<p>③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하는 화주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담보한도액 범위인 경우이거나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p> <p>④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p>	<p><u>③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u></p> <p><u>④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하는 화주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담보한도액 범위인 경우이거나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u></p> <p><u>⑤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u></p>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보세사 개정사항 안내

(초판 1쇄 2025.05.12)

※ 4과목 수출입안전관리 ※

	기존표현	개정표현
용어 개정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지방해양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223 1. (6)	(6) 통관적법성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 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6) 통관적법성 <u>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감면 및 사후 관리, 원산지, 외환, 지재권, 보세화물 관리,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도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을 포함한 수출입관련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말한다.</u>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223 1. (7)	<p>(7) 예비심사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업체가 희망하여 관세청장이 공인을 신청할 때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와 내용을 안내하고, 공인기준 중에서 일부를 정해서 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 이 이를 충족하는지 예비적으로 확인하 는 것을 말한다.</p>	<p>(7) 예비심사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u>전인</u> <u>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제출서</u> <u>류의 적정성 등 공인 또는 갱신심사 신청</u> <u>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7조의2제1항</u> <u>각 호의 사항을 예비적으로 확인하고</u> <u>그 결과를 안내</u>하는 것을 말한다.</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225 3. (1)	<p>(1) 공인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공인기준 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는 평가방법 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p>	<p>(1) 공인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u>각 공인부</u> <u>문별 공인기준의 세부 내용(이하 "세부</u> <u>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u></p>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225 3. (2)	(2) 공인기준 세부사항 안내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준별로 충족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2) 공인기준 세부사항 안내 <u>관세청장은 각 세부기준을 필수적인 기준과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제6조제1항 혹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인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수출자 부문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는 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u>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227 5. (1)	(1) 공인등급 상향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상기 4.의 (1)에 따른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의 조정 신청을 받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이 아닌 때에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1) 공인등급 상향 <u>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위 공인등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4분기 동안 연속으로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공인등급의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를 신청하면서 공인등급의 상향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u> <u>① 공인을 최초로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 유효기간의 첫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u> <u>② 인이 갱신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 이전 공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u> <u>③ 항에 따라 공인등급이 상향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상향 결정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이후의 기간 중 연속된 4개 분기</u>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P. 241 2. ② 수정 ③ 신설</p>	<p>② 관세청장은 상기 ①에 따른 공인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업체에 오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p>	<p>② <u>관세청장은 수입자 부문 신청업체에 대하여 공인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분석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③ <u>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과정에서 공인부문별로 통관적법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심사(이하 "통관적법성 심사"라고 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p> <p>㉠ <u>수입자 부문: 법과 그 밖에 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관세평가, 품목분류, 환급·감면 및 사후관리, 원산지, 외환, 지재권, 보세화물 관리,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사항 등 관련 세관신고·화물관리 및 신고납부세액 등의 적정성</u></p> <p>㉡ <u>관세사 부문: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u></p> <p>㉢ <u>그 외 공인부문: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u></p>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보세사 개정사항 안내

(초판 1쇄 2025.05.12)

※ 5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기존표현	개정표현
용어 개정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International trade education

무공사아카데미